구 분	용 도	허용용도	불허용도	건폐율	용적율	높 이
A-1	단독 (1종)	단독주택 / 종교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전시회, 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및 유치원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50% 이하	3층 이하
A-2	단독 (2종)	단독주택, 근린시설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80% 이하	3층 이하
A-3	단독 (1종)	단독주택 / 종교시설 노인요양시설 중 재활훈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및 유치원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00% 이하	2층 이하
A-4	단독 (2종)	단독주택, 근린시설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120% 이하	2층 이하
B-1	다세대주택/ 연립주택 (2종)	단독주택 / 종교시설 다세대,다방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의 1층 근린생활시설(휴양숙박한정)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200% 이하	4층 이하
C-1	연립주택 (2종)	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의)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40% 이하	120% 이하	4층 이하
D-1	고층APT (3종)	APT 및 부대복리시설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의)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250% 이하	20층 이하
D-2	고층APT (3종)	APT 및 부대복리시설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면 적의)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250% 이하	15층 이하
D-3	D-3(XL 아파트)용도는 별후 XL(대)아파트 편입되지전 XL(대)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				
E-1	일반상업	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숙박 단수시설 중 유독물저장, 관광시설, 방송시설 광물,분말처리 (제조업은 도시계획조례에 위반) 자동차 관련시설(주유소 포함) 위험 및 혐오시설시설 창고시설 공장 및 기숙사시설 건축사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분야시설 제외) 유사한 관련시설 모텔시설	70% 이하	330% 이하	3~5층
E-2	일반상업			70% 이하	550% 이하	5~8층
F-1	학 교	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(단, 유치원은 제외)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% 이하	100% 이하	5층 이하
G-1	공용의 청사	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, 파출소,우체국,보건소 등 공공이 요하는 시설 및 정치시설중 공공청사시설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% 이하	250% 이하	5층 이하
H-1	주 차 장	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정비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90% 이하	1,500% 이하	28m 이하

※ 주) 'D-1'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'A-2'계획내용 준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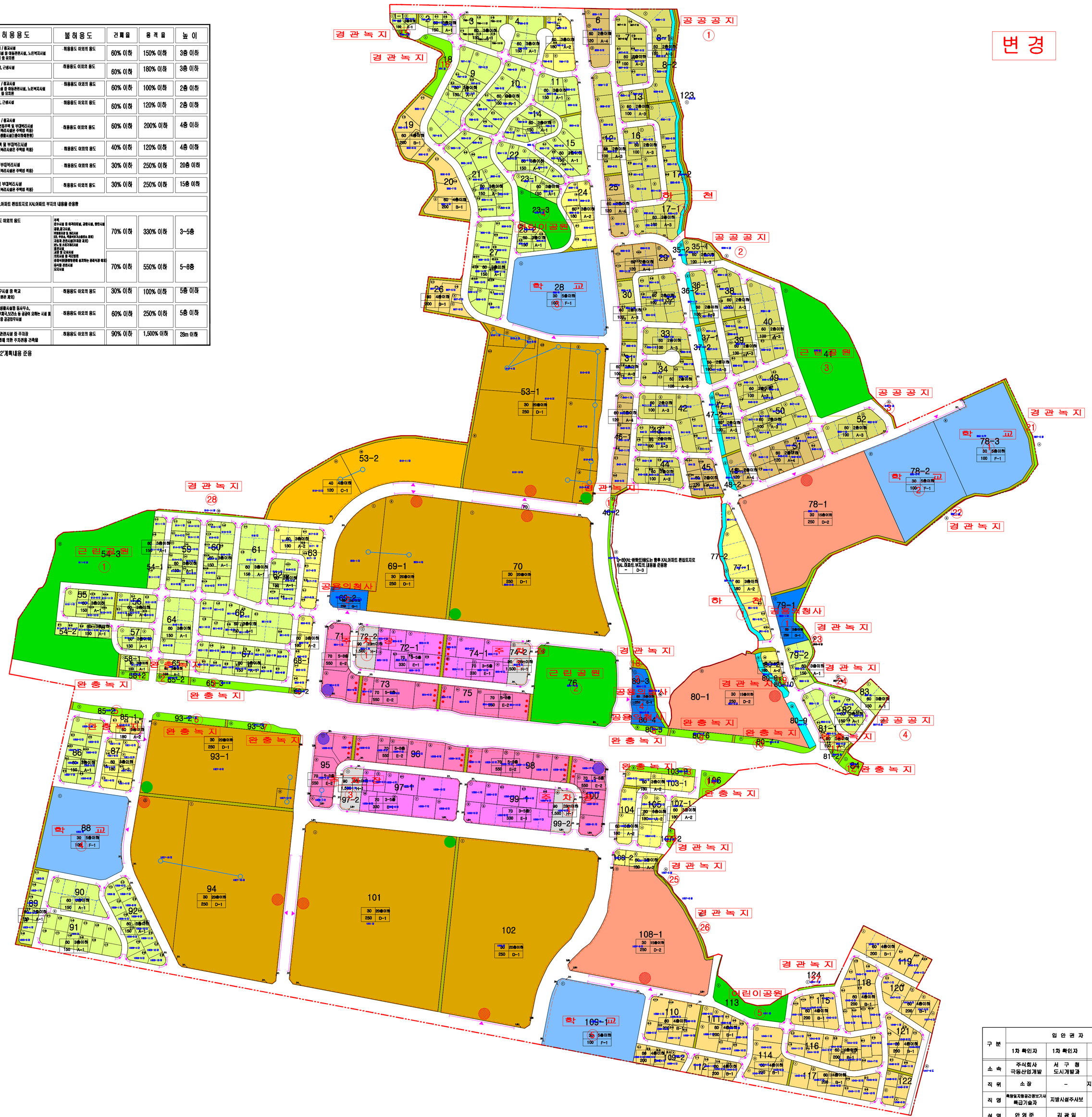

구 분	입 안 권 자			결 정 권 자	
	1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주식회사 극동산업개발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
직 위	소 장	-	지역개발팀민담당	-	지역개발팀민담당
직 명	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특급기술자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
성 명	안 영 준	김 광 일	이 성 호	김 광 일	이 성 호
확인인					